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63호

2015년 2월 2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130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3

규 칙

- 규 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3

훈 령

- 훈 령 제31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8

공 고

- 공 고 제2015- 1592호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1
- 공 고 제2015- 160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입법예고(수정)
- 공 고 제2015- 1608호 공인 폐기 공고 36
- 공 고 제2015- 161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 남촌동 종합체육시설]사업 39
보상계획 열람 공고
- 공 고 제2015- 16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42
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 공 고 제2015- 162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7
전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남 동 구 보 건 소 56
공 고 제2015- 71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제 1263호

2015년 2월 2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고 시

- 고시 제2015- 154호 도로명주소 고시 57
- 고시 제2015- 1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능골지구 소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60
- 고시 제2015- 1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능골지구 소3-4, 소3-5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67
- 고시 제2015- 157호 도로명주소 고시 75

회 람								
--------	--	--	--	--	--	--	--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130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봉사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가출인 보호 활동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조직) ① 방법대는 대장, 수석부대장, 부대장, 총무 및 자율방법대원(이하 “방법대원”이라 한다) 등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방법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방법대 및 연합대의 조직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천 남동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자율방법대관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설립 및 등록) ① 방법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법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관할 지구대 또는 치안센터(파출소)를 경유,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자율방법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신청 사항이 적합한지를 검토·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방법대 및 인천남동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신청 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제4조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해당 방법대 및 인천남동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연합대 구성 및 역할) ① 방법대는 지역 간 방법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연합대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합대는 남동구청과 협력하여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사업을 주관하고, 각 동 방법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등록되어 1년 이상 방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방법대와 연합대로 한다.

제8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방법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
2.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야식비, 실소요 출동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법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예산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 및 장비 등은 방법대원이 제3조의 임무 수행 시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율방범대장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는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금의 사용 및 활동실적을 연간 2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남동경찰서와 협의하여 방법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법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방법활동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법대 및 모범대원에게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법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설립 ·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설립자	① 대표자성명	한글		② 생년월일		
		한자				
	③ 주소					
신청내용	④ 명칭					
	⑤ 목적					
	⑥ 초소위치		(연락처 :)			
	⑦ 총 인원					
	⑧ 시설·장비					
	⑨ 설립 연월일					
	⑩ 순찰동선(범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 방법대명(대표자명) :
2. 대 원 수 :
3. 순찰일시/횟수 :
4. 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농·축산	자영업	회사원	건설업	서비스업	기 타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 장비보유현황

○ 방법초소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 적(m ²)	설치재원	비 고
초 소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	무전기	가스총	순찰봉	순찰차량		오토바이	기 타
				차 종	대 수		

()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illegible]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구 분	근무조장 (휴대전화)	근 무 조 원	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등록대장

[illegible]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역사회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 기대

□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 구성, 설립 및 등록 절차 규정 (제4조~제5조)
 - 관할 지구대 또는 치안센터 경유, 적합여부 심사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 제출
-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 (제7조~제8조)
 - 소모성 운용비, 야식비, 실소요 출동비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비 및 보조금
- 지원금사용 및 활동실적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규정 (제9조~제10조)
 - 연간 2회 이상 지도감독 및 행정지도
 -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거나 목적외 지원금 사용시 지원중단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16일

남동구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차종·차형·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제5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내 구 연 한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구청장 ○ 구의회 의장	○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이상
	중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부구청장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구 본청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구 본청	○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 차량 최단운행기 간이 10년을 경과하 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차량 최단운행기간 이 7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소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구 본청 ○ 의회사무국 ○ 구 소속기관	
	다목적형 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유형별 세부 기준에서 정한 자동차를 말 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경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경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 동 주민센터	
승합형	대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 차량 최단운행기 간이 10년을 경과하 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차량 최단운행기간 이 7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중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소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경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내 구 연 한
화물용	대형화물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화물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 차량 최단운행기간 이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차량 최단운행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로 한 정)
	중형화물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화물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소형화물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화물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경형화물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화물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특수용	청소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구급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진료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분뇨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급수·살수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농림방재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이동수리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트럭트렉타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트레일러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렉카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소방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기타 특수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별표 2)

기관별 차량정수기준 (제6조관련)

1. 승용자동차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 준 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및 다목적승용차	경승용차
합계	22대	2대	2대	18대	
구 본 청	18대	1대 (구청장 전용)	2대 (부구청장 전용1대, 업무용 1대)	15대	업무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정 대수 배정
구 의회사무국	2대	1대 (의장 전용)		1대	
보 건 소	1대			1대	
사업소, 동 주민센터	1대			1대	

2. 승합자동차 기준정수

용 도 별	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가. 구 본청 : 통근인원 · 통근거리 ·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소속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업 무 용	○ 행정업무 지원과 원활한 행사 진행 및 인원 수송을 위한 적정한 차형과 대수 배정
사업용 및 기타	○ 각종 설비탐재, 지도 · 단속공무원 수송, 의정활동 지원 등 특수 업무 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자동차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 업 용	○ 도로의 연장 · 도로상태 · 교통량 및 유지 · 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 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 종 단 속 용	○ 각종 단속 · 지도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동 주민센터 용	○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기 타 사 업 용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자동차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 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기 타 용	○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신설 및 동 주민센터의 인구·면적·수급자 수 등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업무용 승용 공용차량을 적절히 배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승용(업무용) 소형승용차의 배정대상에서 남동문화예술회관 삭제 및 동주민센터 신설 (별표1)
- 승용자동차 기준정수 차량정수배정대상기관에서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주민센터 병기 및 남동문화예술회관 기준정수를 삭제하여 구본청 기준정수에 포함. (별표2)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16일

남동구 훈령 제31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에”을 “호에”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를 제외한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계획, 조사, 자문, 검토를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타용역”이란 제1호, 제2호 및 단순 노무성 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유상으로 위탁하는 외주관리 등의 용역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용역과제의 선정)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타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연구실적, 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전단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역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학술용역실명제) ① 학술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학술용역사업 실명 대상 공무원은 사업 관련 국장·보건소장·과장·담당팀장·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학술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12조 전단 중 “관계자의”를 “관계자 및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학술용역 결과 공개)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 결과를 행정자치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에 따라 용역실명제 및 용역사업결과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대체위원회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역 개념에 관한 규정 명확화(제2조)
- 용역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규정(제4조의2)
-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변경(제6조)
 - [변경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 ⇒ [변경 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학술용역실명제 및 학술용역사업 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제9조의2 및 제13조)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592호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0.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제 목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5. 10. 19. ~ 2015. 11. 2.(14일간)

공고대상 : 이** 외 5인

기 타 : 위 공고문에 대하여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재산관리팀(☎ 032-453-2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세 목	과세 년월	부과금액	반송사유
양**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	변상금 및 가산금	2012		폐문부재
이**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	변상금 및 가산금	2012		폐문부재
전**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	변상금 및 가산금	2012		폐문부재
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	변상금 및 가산금	2012		폐문부재
하**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	변상금 및 가산금	2012		폐문부재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60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10.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사용·수익료 면제 등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례 반영(안 제3조, 제3조의2, 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 나.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19조의2)
- 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수익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31)
- 라. 상위법 근거조항 명시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9조의2, 안 제26조, 안 제37조, 안 제39조)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재무과)/전화 453-2272, FAX453-226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사용·수익료 면제 등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례 반영(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19조의 2)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수익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31조)
- 상위법 근거조항 명시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9조의2, 안 제26조, 안 제37조, 안 제3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13조, 제17조,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남동구 조례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2명의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 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 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⑥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격요건)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3조의3(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제1항에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3항제19호”를 “제13조제3항제20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재정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수임기관에게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공간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을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감면할 수”를 “감면할 수 있으며,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은 경우 전액 감면 할 수”로 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39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2명의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 기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⑥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3조의2(자격요건) 영 제7조의2제1 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 계획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3조의3(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 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 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 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u>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4. (생략) 5. <u>기타</u>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의 <u>규정</u>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u>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u> ② <u>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u> ③ <u>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u>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u>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u>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 ② ----- ----- ----- -----. 1. <u>영 제7조제3항</u> ----- ----- ----- -----
2. (생략)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u>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u>	2.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u>제7조에 따른</u>----- -----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를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생략)

②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략)

2.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구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3조제3항제20호 -----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재정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수임기관에게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공간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 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② (생략)

③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

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

1. ~ 6.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감면할 수 있으며,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의회 동의
를 얻은 경우 전액 감면 할 수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

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⑤ (생략)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구와 당해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4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참고자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17호, 2015.1.20., 일부개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지

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7.21.] [대통령령 제26408호, 2015.7.20., 일부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6.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 4. <생략>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7. <생략>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 3. <생략>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 19. <생략>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38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 30. <생략>

31.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2. ~ 33. <생략>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2015.4.29.] [법률 제13082호, 2015.1.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 10. <생략>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608호

공인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인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인 폐기 사유
 - 구월1동 현장민원실 운영 종료
- 공인 폐기일 : 2015. 10. 21.
- 폐기 공인수 : 1개
- 폐기 공인명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비 고
폐 기 공 인	구월1동장인인 (현장민원실전용)		한글전서체 2.1cm × 2.1cm	

※ 공고된 공인의 규격은 실물이 아니므로 실제규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615호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도로 : 남촌동 종합체육시설]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남촌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5. 10.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 남촌동 종합체육시설)
 - 명 칭 : 남촌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3. 사업의 규모
 - 체육시설 : A=32,975㎡
 - 도 로 : 소로3-30호선, L=127.0m, B=6.0m(A=759㎡)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10-8번지 일원
5. 보 상 시 기 : 2015. 11월 ~
6.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남촌동 510-267번지 외 3
 - 지 장 물 : 체육시설 및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15. 10. 26. - 2015. 11. 09
11.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 ②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문화체육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문화체육과에 문의(☎032-453-2158)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용지조서

구 분	동명	지 번	지목	공 부 (㎡)	편입면적 (㎡)	잔 여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1	남동구 남촌동	510-267	답	21.0	21.0	-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857, ***동 ***호	김 * * 외7인			
2	남동구 남촌동	510-265	답	39.0	39.0	-	인천시 남구 용 현 동 ***-***	김**			
3	남동구 남촌동	510-262	답	679.0	679.0	-	인천시 남구 용 현 동 ***-***	김**			
4	남동구 남촌동	601-12	구	18.0	18.0	-		(국) 농 립 축 산 식품 부			
5	남동구 남촌동	510-261	잡	2.0	2.0	-	인천시 남동 구 간석동 ***	허*			
6	남동구 남촌동	510-8	유	27,985.0	27,985.0	-		인천 광 역시 남동구		(국)기획재정 부	근저 당권
7	남동구 남촌동	510-245	유	4,990.0	4,990.0	-		인천 광 역시 남동구		(국)기획재정 부	근저 당권
8											
9											
10											
합계				33,734.0	33,734.0						

▶ 지장물조서

번호		동명	지번	종류	구조및 규격	총면적	편입 면적	잔여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1	남동구 남촌동	510-265, 510-262	V.H		127.6	6.1	121.5	인천시 남구 용현동 ****-**-**	김**	
2	-1	남동구 남촌동	510-8	건물	술라브,2F	132.7	34.5	98.2		인천광역시 남동구	
3	-1	남동구 남촌동	510-262,51 0-261,601- 12	개장	목재	16.5	9.0	7.5	인천시 남구 용현동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	김**,허*, (국)농림축산식 품부	
	-2	남동구 남촌동	510-8	개장	목재	4.0	2.6	1.4			
	-3	남동구 남촌동	510-8	개장	목재	4.0	4.0	-			
	-4	남동구 남촌동	510-8	개장	목재	6.0	6.0	-			
	-5	남동구 남촌동	510-8	건물	스래트	130.0	84.5	45.5			
	-6	남동구 남촌동	510-8	철재	철재	2.0	2.0	-			
4	-1	남동구 남촌동	510-8	철재	철재	8.8	5.0	3.8			
	-2	남동구 남촌동	510-8	개장	철재	9.3	5.2	4.1			
	-3	남동구 남촌동	510-8	V.H	V.H	47.6	34.7	12.9			
	-4	남동구 남촌동	510-8	화장 실	스래트	23.8	15.4	8.4			
5	-1	남동구 남촌동	510-8	V.H	비닐하우 스	39.0	14.4	24.6		인천광역시 남동구	
6	-1	남동구 남촌동	510-8	가건	비닐하우 스	19.3	10.5	8.8		인천광역시 남동구	
7	-1	남동구 남촌동	510-8	V.H	비닐하우 스	23.1	8.4	14.7		인천광역시 남동구	
	-2	남동구 남촌동	510-8	콘테 이너	콘테이너	1.0EA	1.0EA	-		인천광역시 남동구	
8	-1	남동구 남촌동	510-8	V.H	비닐하우 스	110.0	30.0	80.0		인천광역시 남동구	
9	-1	남동구 남촌동	510-8	V.H	비닐하우 스	132.0	50.4	81.6		인천광역시 남동구	
10	-1	남동구 남촌동	510-245	V.H	비닐하우 스	426.4	90.2	336.2		인천광역시 남동구	
11	-1	남동구 남촌동	510-245	V.H	비닐하우 스	34.7	34.7	-		인천광역시 남동구	
12	-1	남동구 남촌동	510-245	V.H	비닐하우 스	426.6	86.9	339.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618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5. 10.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능골지구 소2-1호선)
 - 명 칭 :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2-1호선 B=8.0m, L=428m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22-3번지 일원
5. 보 상 시 기 : 2015. 11월 ~
6.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 건설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수산동 322-3번지 외 32
 - 지 장 물 : 도로개설 구간에 저축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15. 10. 26. - 2015. 11. 11
11.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 ②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032-453-2712)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 지 조 서(1)

능골지구 소 2-1호선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잔여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성명	주 소				
1	322-3	전	149	149	-	윤*철	인천 남동구 수산동 ***	남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지상권	
2	597-47	도	10,202	998	9,204	국	건설부				
3	319-4	전	31	31	-	신*섭	인천 남동구 구수골로 ** (수산동)	남 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4	323-6	전	8	8	-	박*양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남 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지상권	
5	323-5	전	1	1	-	박*양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남 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지상권	
6	341-1	전	150	150	-	송*영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인천****현동조합	인천 동구 새골로 *** (송림동), (서창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7	340-6	전	115	115	-	송*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33번길 23, ***동 ***호 (만수동,남동아파트)				
8	340-5	전	169	169	-	김*중 외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57 소재마을풍림아파트 ***-*****	주 식 회 사 **은 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2가*-* (구월동지점)	근저당권	
9	342-2	도	30	30	-	이*근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주 식 회 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 (여의도동)	근저당권	
10	338-12	도	293	293	-	이*근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주 식 회 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 (여의도동)	근저당권	
11	338-14	전	146	146	-	재단 법인* **** ***유 지재 단	서울 중구 태평로1가 ***-				
12	338-13	전	145	145	-	이*근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주 식 회 사 **은 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2가*-* (인천원당지점)	근저당권	
13	521-1	전	58	58	-	정*자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번길 (송학동3가)	주 식 회 사 **은 행	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회현동1가) (부평중앙지점)	근저당권	
14	501-1	전	225	225	-	송*영	인천 남동구 수산동 ***	남동****조합 ****조합 중앙 회 ***은 주 식 회 사	인천광역시남동구장승로** 서울중구충정로1가** 서울중구통일로*** (충정로1가) (인천웅진군지부)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소 계			11,722	2,518	9,204						

용 지 조 서(2)

능골지구 소 2-1호선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잔여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성 명	주 소		주 소		
15	502-1	전	10	10	-	천*현	서울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325동신대아파트 ***동***호	남동 ****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지상권	
16	519-3	도	71	71	-	황*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39-1 간석래미안자아파트 ***동 ***호	**** 재 합 회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근저당권	
17	512-12	도	57	57	-	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곡동 96-1 ***동 ***호 (예곡메트로현대화공에그린아파트)	농 업 **** 중 회 사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신림로2가	근저당권	
18	518-4	전	34	34	-	모*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19	512-13	도	26	26	-	주식회 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 * 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송도테크노파크지점)	근저당권	
20	518-5	대	5	5	-	오*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남 동 **** 합 회 소 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21	513-1	도	98	98	-	주식회 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 * 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송도테크노파크지점)	근저당권	
22	514-3	대	56	56	-	박*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호	남 동 **** 합 회 소 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지상권	
23	515-1	대	11	11	-	김*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 *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간석동)	근저당권	
24	517-1	임	102	102	-	송*창 외 4인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25	518-4	임	82	82	-	주*자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번길 ** (주안동)	**** * 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	
26	551-4	전	60	160	-	차*태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27	525-8	전	37	37	-	대한**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송* 회	인천 남구 학익동 ***-*	근저당권	
28	551-3	전	7	7	-	송*덕 외 1인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				
29	535-2	전	41	41	-	***영 농 조 합 법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층	남 동 **** 합 회 소 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지상권	
소 계			797	797	-						

용 지 조 서(3)

능골지구 소 2-1호선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잔여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성 명	주 소		주 소		
30	550-1	전	48	48	-	주*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망아파트 *동 ***호				
31	535-3	전	83	83	-	***영 농 조 합 법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층	남 동 **** 합 회 소 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지상권	
32	549-3	전	34	34	-	***협 동 조 합 중 앙 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				
33	536-8	전	1	1	-	최*섭 외 1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920-1 대우3차아파트 ****-***				
소 계			166	166	-						
총 계			12,685	3,481	9,204						

지 장 물 조 서 (1)

공사명 :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단위	수량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수산동	322-3	조경석		m	34.4		윤*철	인천 남동구 수산동 ***	
			교 목	D10	주	12		윤*철	인천 남동구 수산동 ***	
2	수산동	341-1	비닐하우스	강봉조	동	1	22.6 m ²	송*영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창 고	저온저장고	동	1	17.6 m ²	송*영	인천남동구배려터로*** (수산동)	
3	수산동	340-6	담 장	콘크리트블럭	m	15.5		송*화	인천광역시남동구장승남로 33번길23,***동***호	
4	수산동	342-2	담 장	메쉬웬스	m	3.2		이*근	인천시남동구배려터로** (수산동)	
5	수산동	338-12	대 문	디자인웬스 출입문	개	1		이*근	인천시남동구배려터로61 (수산동)	
			담 장	디자인웬스	m	70.2		이*근	인천시남동구배려터로** (수산동)	
			교 목	향나무(D5)	주	15		이*근	인천시남동구배려터로** (수산동)	
			교 목	D5	주	15		이*근	인천시남동구배려터로** (수산동)	
			교 목	D1	주	100		이*근	인천시남동구배려터로** (수산동)	
6	수산동	338-14	교 목	D15	주	2		재단법인****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1가 ***	
			교 목	자두나무(D5)	주	3		재단법인****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1가 ***	
			교 목	앵두나무(D5)	주	2		재단법인****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1가 ***	
			교 목	대추나무(D5)	주	1		재단법인****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1가 ***	
			교 목	감나무(D5)	주	2		재단법인****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1가 ***	

지 장 물 조 서 (2)

공사명 :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단위	수량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7	수산동	338-14	옹 벽	H=1.2m	m	18.2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1가 ***-	
			관 목		m2	27.6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1가 ***-	
8	수산동	338-13	비닐하우스	강봉조	동	1	15.9 ㎡	이*근	인천시남동구배려터로** (수산동)	
			교 목	D10	주	1		이*근	인천시남동구배려터로** (수산동)	
			담 장	메쉬웬스	m	6.7		이*근	인천시남동구배려터로** (수산동)	
			대 문	메쉬웬스 출입문	개	1		이*근	인천시남동구배려터로** (수산동)	
9	수산동	338-5	담 장	벽돌	m	4.9		이*근	인천시남동구배려터로** (수산동)	
			교 목	D15	주	1		이*근	인천시남동구배려터로** (수산동)	
			교 목	D1	주	20		이*근	인천시남동구배려터로** (수산동)	
10	수산동	518-4	교 목	D10	주	1		모*상	인천 남동구 수산동 ****-	
			교 목	D5	주	2		모*상	인천 남동구 수산동 ****-	
11	수산동	518-5	대 문	철제출입문	개	1		오*문	인천 남동구 수산동 ****-	
			담 장	벽돌	m	4.6		오*문	인천 남동구 수산동 ****-	
			교 목	D15	주	1		오*문	인천 남동구 수산동 ****-	
12	수산동	513-1	옹 벽	H=1.5m	m	14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수산동 ***	
13	수산동	514-3	대 문	EGI웬스	개	1		박*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호	
			담 장	EGI웬스	m	10.3		박*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호	

지 장 물 조 서 (3)

공사명 :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단위	수량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4	수산동	525-2	화 단	콘크리트	개	1		대한불교**** * ***	인천 남동구 수산동 ****-	
			교 목	D5	주	2		대한불교**** * ***	인천 남동구 수산동 ****-	
			관 목		m2	6.1		대한불교**** * ***	인천 남동구 수산동 ****-	
15	수산동	525-2	교 목	D15	주	2		대한불교**** * ***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각상		개	8		대한불교**** * ***	인천 남동구 수산동 ****-	
16	수산동	535-3	조경석		m	3		*****조합법 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 *층	
			관 목		m2	8.8		*****조합법 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 *층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62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규 정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2. 제안이유

- 근거 규정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는 등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체계화하여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제33조(기타법령 준용) 삭제
 -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규정의 근거 규정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대행하는 등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체계화하여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 변경) 조례·규칙심의회 대행 (안 15조)
- 용어의 정의, 헌장의 적용범위 및 제정 원칙, 평가방법 등 상위 지침 반영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2조)
- 헌장의 제·개정 절차 용어 순화 (안 제8조)
- 헌장의 구 홈페이지 게시 추가 (안 제10조)
- 보상금액 상향 조정(5,000원 → 10,000원) 및 물품 목록 개정 (안 제14조)

☐ 본 문 : “별 첨”

☐ 참고자료

-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남동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 (이하 “서비스” 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가 주민의 생업 또는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관업무 분야별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2. “행정서비스헌장” (이하 “헌장” 이라한다)이란 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고객” 이란 구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기업체·단체 등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 란 구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태도,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구의 이행정도 및 민원인 편의 시설 등 고객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구 본청, 「지방자치법」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행정서비스헌장

제4조(헌장의 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본청의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개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장을 개선하여야 한다.

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헌장의 내용이 실천하기에 비능률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3. 고객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5. 그 밖에 여건의 변동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이외에도 고객의 요구사항 및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충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정기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7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목표, 내용, 처리기준 및 원칙
 2.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에 관한 정보
 - 가. 서비스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요구 방법과 절차
 - 나. 서비스 제공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 다. 서비스의 처리절차,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의 통지방법
 - 라. 서비스 제공 공무원의 부서명과 연락처
 - 마.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등
 4.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 가.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방법과 절차
 - 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이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등
 5. 지역사회 구성주체로서의 고객의 협조사항
 - 가. 고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권리행사에 따른 책임
 - 나. 행정기관이 고객에게 당부하는 사항 등
 6. 공무원의 봉사 자세와 다짐
 - 가. 헌장에서 제시된 행정의 원칙과 목표의 준수
 - 나. 고객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명시
- ②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법령 또는 각종 규정 등에 기준이 있는 사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의 제·개정 절차) ① 현장 제·개정시 고객의 요구사항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은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서비스현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현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현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구정홍보지 게재, 언론매체 활용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2.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② 현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③ 고객이 현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장 제정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의 관리 및 게시) ① 현장은 내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현장의 주요내용은 구 홈페이지와 사무실 등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의 이행) ① 현장제정 기관의 장은 제정 및 개선계획 수립에 따라 현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개선하고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 산하 모든 공무원은 행정서비스현장 전문과 공통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분야별 서비스 이행 기준은 이를 제정한 부서의 소속공무원 모두가 준수하여야 하며,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및 창의적인 업무 개선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 구청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법인·단체의 현장 운영 실태를 확인,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 이행실태 확인, 평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이행실태
2.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 현장에 반영·개선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4. 우수 부수 및 우수 공무원의 선정

③ 평가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현장의 이행실태 확인, 평가결과는 현장 개선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① 현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전화·서면·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객 불만접수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 후 처리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현장 제정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고객 불만 접수 처리대장은 현장제정 부서별로 비치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연락처
2. 접수일시
3. 불만내용
4. 처리방침의 내용 및 처리예정일
5. 처리결과 및 회신일자

제14조(보상조치) ① 현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0,000원 상당의 물품 및 지역의 생산품 등으로 보상.
2. 물품은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함.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고객 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행정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즉시 고객 불편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고객 불편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결과 고객 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보상물품은 고객 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① 헌장의 제정 및 개선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의 내용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제16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우수기관 등에 우대조치) 구청장은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백서의 발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현장 관련업무 활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의 개선 내용
2. 현장의 제정·개선 현황
3.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 현황
4. 서비스 결과의 확인·점검 및 그 평가 결과
5. 우수서비스 부서 또는 업무

제19조(협조요청) 행정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71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 11. 03.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5. 10. 23. ~ 2015. 11. 02. (11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 음식점	2011- 0200060	고구려모밀과 연탄불고기	강*석	논현로26번길 6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05.30.	2015.11.03.

6.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15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53 외 19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88번길 44-17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2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0. 16.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1092-52, -53	인천광역시남동구	문화로	153	2009.7.6	인근에 위치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문화로153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53을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남동구	논현동	592-26	인천광역시남동구	논고개로176번길	11	2009.11. 16	논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논고개로176번길11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1을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남동구	서창동	732	인천광역시남동구	서창방산로158번길	14	2014.7.25	서창방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서창방산로158번길14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4를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남동구	장수동	790-4	인천광역시남동구	장자로6번길	106	2009.11. 16	장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장자로6번길106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06을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보급자리주막지구	상업13-2	인천광역시남동구	선수춘공원로23번길	1	2014.7.25	선수춘공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선수춘공원로23번길1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을건물번호로부여	
6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보급자리주막지구	D4-4	인천광역시남동구	선수춘공원로55번길	15	2014.7.25	선수춘공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선수춘공원로55번길15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5를건물번호로부여	
7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보급자리주막지구	D6-3	인천광역시남동구	선수춘공원로55번길	21-19	2014.7.25	선수춘공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선수춘공원로55번길21-19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21-19를건물번호로부여	
8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	143	인천광역시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8-30	2009.11. 16	청능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청능대로484번길8-30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8-30을건물번호로부여	
9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	144-7	인천광역시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8-31	2009.11. 16	청능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41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청능대로484번길8-31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8-31을건물번호로부여	
10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	144-6	인천광역시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8-27	2009.11. 16	청능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42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청능대로484번길8-27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8-27을건물번호로부여	
11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	144-5	인천광역시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8-25	2009.11. 16	청능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43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청능대로484번길8-25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8-25를건물번호로부여	
12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	144	인천광역시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8-23	2009.11. 16	청능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44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청능대로484번길8-23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8-23을건물번호로부여	
13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	147	인천광역시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28-26	2009.11. 16	청능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45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청능대로484번길28-26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28-26을건물번호로부여	
14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	147-6	인천광역시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28-28	2009.11. 16	청능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46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청능대로484번길28-28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28-28을건물번호로부여	
15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	147-7	인천광역시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28-30	2009.11. 16	청능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47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청능대로484번길28-30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28-30을건물번호로부여	
16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	120-3	인천광역시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8-13	2009.11. 16	청능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48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청능대로484번길8-13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8-13을건물번호로부여	
17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	120-14	인천광역시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8-11	2009.11. 16	청능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49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청능대로484번길8-11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8-11을건물번호로부여	
18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	120-15	인천광역시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8-7	2009.11. 16	청능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5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청능대로484번길8-7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8-7을건물번호로부여	
19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	312-5, -6, -13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로84번길	34	2009.11. 16	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고잔로84번길34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34를건물번호로부여	
20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1270-10, -1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로	283	2009.7.6	구월동을 관통하는 구월로의 남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5. 10. 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구월로283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283을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12-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 로88번길	44-17	2015.10.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1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 로88번길	44-19	2015.10.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7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 84번길	28-30	2015.10.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1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능골지구 소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5-152호(2015.10.16.)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능골지구 소2-1호선】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및 건설과(☎453-27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10.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529-1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능골지구 소2-1호선)
 - 명 칭 :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 사업규모
 - 소로2-1호선 B=8.0m, L=428.0m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6.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시행	소로	2	1	8	국지	총연장: 435m 금회개설: 428m	수산동 322	수산동 549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능골

용 지 조 서 (1)

소2-1호선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일련 번호	기정 변경	지 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기정	322-3	전	149	149	-	윤**	인천 남동구 수산동 ***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변경
	변경	322-3	전	149	149	-	윤**	인천 남동구 수산동 ***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2	기정	597-47	도	10,202	998	9,204	국	건설부				변경 없음
3	기정	319-4	전	31	31	-	신**	인천 남동구 구수골로 ** (수산동)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변경 없음
4	기정	323-6	전	8	8	-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변경
	변경	323-6	전	8	8	-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5	기정	323-5	전	1	1	-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변경
	변경	323-5	전	1	1	-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6	기정	341-1	전	150	150	-	송**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인천**** 협동조합	인천 동구 셋골로*** (송림동),(서창지점)		변경
	변경	341-1	전	150	150	-	송**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인천**** 협동조합	인천 동구 셋골로*** (송림동),(서창지점)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7	기정	340-6	전	115	115	-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변경
	변경	340-6	전	115	115	-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번길 **, ***동 ***호(만수동,남동아파트)				
8	기정	340-5	전	169	169	-	김** 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57 소래마을풍림아파트 ***.***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 (구월동지점)	근저당권자	변경 없음
9	기정	342-2	도	30	30	-	이**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 (여의도동)	근저당권자	변경 없음
10	기정	338-12	도	293	293	-	이**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 (여의도동)	근저당권자	변경 없음
11	기정	338-14	전	146	146	-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1가 **..*				변경 없음
12	기정	338-13	전	145	145	-	이**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 (인천원당지점)	근저당권자	변경 없음
13	기정	521-1	전	58	58	-	정**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번길 (송학동3가)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 (회현동1가) (부평중앙지점)	근저당권자	변경 없음

용 지 조 서 (2)

소2-1호선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일련 번호	기정 변경	지 번	지목	면적(m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4	기정	501-1	전	225	225	-	송**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 (충정로1가) (인천용진군지부)	근저당권자	변경
	변경	501-1	전	225	225	-	송**	인천 남동구 수산동 ***	-남동**** 조합 -****조합 중앙회 -**은행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서울중구 충정로1가 ** -서울 중구 통일로 *** (충정로1가) (인천용진군지부)	-근저당권 자 지상권자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 자	
15	기정	502-1	전	10	10	-	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호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변경
	변경	502-1	전	10	10	-	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호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16	기정	519-3	도	71	71	-	황**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39-1 간석래미안자아파트 ***동 ****호	***** 제조한국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근저당권자	변경 없음
17	기정	512-12	도	57	57	-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96, ***동 ****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로(신문로2가)	근저당권자	변경
	변경	512-12	도	57	57	-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96, ***동 ****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농업**** 중앙회 -주식회 사 *****	-서울 중구 충정로1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로(신문로2가)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 자	
18	기정	518-4	전	34	34	-	모**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_*				변경 없음
19	기정	512-13	도	26	26	-	주식회 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 (송도테크노파크지점)	근저당권자	변경 없음
20	기정	518-5	대	5	5	-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_*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변경 없음
21	기정	513-1	도	98	98	-	주식회 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 (송도테크노파크지점)	근저당권자	변경 없음
22	기정	514-3	대	56	56	-	박**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호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지상권자	변경
	변경	514-3	대	56	56	-	박**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호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23	기정	515-1	대	11	11	-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 *** 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간석동)	근저당권자	변경 없음
24	기정	산57-1	임	102	102	-	송** 외 4인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변경
	변경	산57-1	임	102	102	-	송** 외 5인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25	기정	산58-4	임	82	82	-	주**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번길 ** (주안동)				변경
	변경	산58-4	임	82	82	-	주**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번길 ** (주안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자	
26	기정	551-4	전	160	160	-	차**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변경 없음

용 지 조 서 (3)

소2-1호선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일련 번호	기정 변경	지 번	지목	면적(m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7	기정	525-8	전	37	37	-	대한**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송준희	인천 남구 학익동 **.*	근저당권자	변경 없음
28	기정	551-3	전	7	7	-	송** 외 1인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89-3				변경 없음
29	기정	535-2	전	41	41	-	영농조 합 법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층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변경
	변경	535-2	전	41	41	-	영농조 합 법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층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30	기정	550-1	전	48	48	-	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희망아파트 *동 ***호				변경 없음
31	기정	535-3	전	83	83	-	영농조 합 법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층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변경
	변경	535-3	전	83	83	-	영농조 합 법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층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32	기정	549-3	전	34	34	-	협동조 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				변경 없음
33	변경	536-8	전	1	1	-	최** 외 1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0-1 대우3차아파트 ***-***				
총 계		기정		12,684	3,480	9,204						
		변경		12,685	3,481	9,204						

지 장 물 조 서 (1)

조서 번호	기정 변경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 의 종류	구 조	단위	수량	면 적	물건소유자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기정	수산동	322-3	조경석		m	34.4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윤**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윤**	변경 없음
				교목	D10	주	12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윤**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윤**	
2	기정	수산동	341-1	비닐하우스	강봉조	동	1	편입면적 (22.6㎡)	인천 남동구 배러터로 **-* (수산동)	송**	인천 남동구 배러터로 **-* (수산동)	송**	변경 없음
				창고	저온 저장고	동	1	편입면적 (17.6㎡)	인천 남동구 배러터로 **-* (수산동)	송**	인천 남동구 배러터로 **-* (수산동)	송**	
3	기정	수산동	340-6	담장	콘크리트블럭	m	15.5		인천시 남구 주안동 ****-*	성** 외2인	인천시 남구 주안동 ****-*	성** 외2인	변경
	변경	수산동	340-6	담장	콘크리트블럭	m	1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33번길 23, ***동 ***호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33번길 23, ***동 ***호	송**	
4	기정	수산동	342-2	담장	메쉬 웬스	m	3.2		인천시 남동구 배러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러터로 ** (수산동)	이**	변경 없음
5	기정	수산동	338-12	대문	디자인 웬스 출입문	개	1		인천시 남동구 배러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러터로 ** (수산동)	이**	변경 없음
				담장	디자인 웬스	m	70.2		인천시 남동구 배러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러터로 ** (수산동)	이**	
				교목	향나무 (D5)	주	15		인천시 남동구 배러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러터로 ** (수산동)	이**	
				교목	D5	주	15		인천시 남동구 배러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러터로 ** (수산동)	이**	
				교목	D1	주	100		인천시 남동구 배러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러터로 ** (수산동)	이**	
6	기정	수산동	338-14	교목	D15	주	2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유지재단	변경 없음
				교목	자두 나무 (D5)	주	3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유지재단	
				교목	앵두 나무 (D5)	주	2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유지재단	
				교목	대추 나무 (D5)	주	1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유지재단	
				교목	감나무 (D5)	주	2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유지재단	
7	기정	수산동	338-14	옹벽	H=1.2m	m	18.2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유지재단	변경 없음
				관목		m ²	27.6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유지재단	

지 장 물 조 서 (2)

조서 번호	기정 변경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 의 종류	구 조	단위	수량	면 적	물건소유자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8	기정	수산동	338-11	비닐하우스	강봉조	동	1	편입면적 (15.9㎡)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61 (수산동)	이**	변경
				교목	D10	주	1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61 (수산동)	이**	
				담장	메쉬웬스	m	6.7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61 (수산동)	이**	
				대문	메쉬웬스출입문	개	1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61 (수산동)	이**	
	변경	수산동	338-13	비닐하우스	강봉조	동	1	편입면적 (15.9㎡)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교목	D10	주	1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담장	메쉬웬스	m	6.7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대문	메쉬웬스출입문	개	1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9	기정	수산동	338-5	담장	벽돌	m	4.9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변경 없음
				교목	D15	주	1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교목	D1	주	20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10	기정	수산동	518-4	교목	D10	주	1		인천 남동구 수산동 ***-*	모**	인천 남동구 수산동 ***-*	모**	변경 없음
				교목	D5	주	2		인천 남동구 수산동 ***-*	모**	인천 남동구 수산동 ***-*	모**	
11	기정	수산동	518-5	대문	철제출입문	개	1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오**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오**	변경 없음
				담장	벽돌	m	4.6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오**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오**	
				교목	D15	주	1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오**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오**	
12	기정	수산동	513-1	옹벽	H=1.5m	m	14.0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주식회사***	변경 없음
13	기정	수산동	514-3	대문	EGI웬스	개	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호	박**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호	박**	변경 없음
				담장	EGI웬스	m	10.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호	박**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호	박**	

지 장 물 조 서 (3)

[illegible]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5-156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 능골지구 소3-4호선, 소3-5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5-153호(2015.10.16.)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 능골지구 소3-4호선, 소3-5호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및 건설과(☎453-27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10.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529-11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능골지구 소3-4호선, 소3-5호선)
 - 명 칭 : 능골지구 소3-4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 사업규모
 - 소3-4호선 : L=230.0m, B=6.0m(총 348m중)
 - 소3-5호선 : L=320.0m, B=6.0m(총 511m중)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6.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시행	소로	3	4	6	국지	총연장: 348m 금회개설: 230m	소3-5 수산동 529-2	수산동 56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능골
시행	소로	3	5	6	국지	총연장: 511m 금회개설: 320m	수산동 529-1	수산동 57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능골

용 지 조 서 (1)

소3-4, 3-5호선
수산동

인천시 남동구

일련 번호	기정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변경			공부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기정	529-1 1	전	60	60	-	한**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 체서피크, 체스터필드루프 *****	남동농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자	변경
	변경	529-1 1	전	60	60	-	한**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 체서피크, 체스터필드루프 *****	남동농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2	기정	529-1 3	전	19	19	-	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 ***동 *****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 코리아 주식회 사	시흥시 정왕동 *****	근저당권자	변경 없음
3	기정	586-1 0	전	13	13	-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양**	인천 남동구 수산동 *****	근저당권자	변경 없음
4	기정	586-1 1	도	49	49	-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변경 없음
5	기정	538-2 6	전	94	94	-	조**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변경 없음
6	기정	538-2 7	도	153	153	-	조**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변경 없음
7	기정	538-1 8	대	48	48	-	조**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변경 없음
8	기정	538-2 8	전	78	78	-	조**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변경
	변경	-				-						
9	기정	538-2 9	전	67	67	-	조**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변경 없음
10	기정	538-2 1	대	44	44	-	이**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로 *번길 ***(전동)	****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 (원천동지점)	근저당권자	변경
	변경	538-2 1	대	44	44	-	이**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로 *번길 ***(전동)	-**** 은행 -명순회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가***(원천동지점) -인천남구인주대로*** 번길**, *동***호 (용현동, 용남아파트)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11	기정	540-6	전	13	13	-	한**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변경 없음
12	기정	538-1 7	대	17	17	-	이**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로 *번길 ***(전동)	****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 (원천동지점)	근저당권자	변경
	변경	538-1 7	대	17	17	-	이**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로 *번길 ***(전동)	-**** 은행 -명순회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가***(원천동지점) -인천남구인주대로*** 번길**, *동***호 (용현동, 용남아파트)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13	기정	538-2 4	대	63	63	-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변경 없음

용 지 조 서 (2)

소3-4,3-5호선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일련 번호	기정	지 번	지목	면 적 (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변경			공부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관계	
14	기정	540-7	전	69	69	-	한**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변경 없음
15	기정	540-4	전	1	1	-	한**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변경 없음
16	기정	538-2 5	대	67	67	-	한**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변경 없음
17	기정	538-3 1	대	3	3	-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수산동)	**** 협동조 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만수동)	근저당권 자	변경
	변경	538-3 1	대	3	3	-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수산동)	-**** 협동조 합 -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만수동)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삼로 ***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 자	
18	기정	538-3 0	대	166	166	-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수산동)	**** 협동조 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만수동)	근저당권 자	변경
	변경	538-3 0	대	166	166	-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수산동)	-**** 협동조 합 -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만수동)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삼로 ***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 자	
19	기정	538-1 9	전	7	7	-	이**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로 **번길**, *동***호 (주안동, 수마루빌라)	**** 협동조 합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 (약대지점)	근저당권 자	변경
	변경	538-1 9	전	7	7	-	이**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로 **번길**, *동***호 (주안동, 수마루빌라)	**** 협동조 합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 (약대지점)	근저당권 자 지상권자	
20	기정	539-1	전	29	29	-	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1	기정	536-3	도	10	10	-	최** 외1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대우*차아파트***-***				변경 없음
22	기정	536-7	전	257	257	-	최** 외1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대우*차아파트***-***				
23	기정	597-4 7	도	10.202	331	9,87 1	국	국토교통부				변경
	변경	597-4 7	도	10,202	331	9,87 1	국	건설부				
24	기정	535-4	전	1	1	-	*** **조 합 법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층	**** 협동조 합		근저당권 자	변경
	변경	535-4	전	1	1	-	*** **조 합 법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층	**** 협동조 합		근저당권 자 지상권자	
25	기정	544-3	전	30	30	-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 협동조 합		근저당권 자	변경 없음

용 지 조 서 (3)

소3-4,3-5호선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일련 번호	기정	지 번	지목	면 적 (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변경			공부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 계	
26	기정	549-2	전	104	14	90	** 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변경
	변경	549-4	전	14	14	-	*** 협동 조합 중앙 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 ***-				
28	기정	529-1 4	전	60	31	29	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동 ****호 (고잔동,호수공원아파트)	*** 코리 아 주식 회사	시흥시 정왕동 ****-	근저당 권자	변경
	변경	529-1 5	전	32	32	-	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동 ****호 (고잔동,호수공원아파트)	*** 코리 아 주식 회사	시흥시 정왕동 ****-	근저당 권자	
29	기정	529-1 2	전	193	193	-	한**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 체스터필드 루프 ****	**** 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 권자	변경
	변경	529-1 2	전	193	193	-	한**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 체스터필드 루프 ****	**** 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 권자 지상권 자	
31	기정	529-1 0	전	24	24	-	조**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 ***동 ****호 (가좌동,가좌한신 휴플러스아파트)				변경 없음
32	기정	587-7	전	175	175	-	윤**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변경 없음
33	기정	587-8	전	114	114	-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동 ***호 (만수동,남동정수사업소관사)	**** 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 권자	변경
	변경	587-8	전	114	114	-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동 ***호 (만수동,남동정수사업소관사)	**** 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 권자 지상권 자	
34	기정	589-1	답	3	3	-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도림동)	**** * 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근저당 권자	변경 없음
36	기정	589-2	답	32	32	-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도림동)	**** * 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근저당 권자	변경 없음
37	기정	578-8	전	100	7	93	고** 외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 ***동 ***호 (남촌동,남촌*차품림아파트)	**** * 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근저당 권자	변경
	변경	578-1 0	전	7	7	-	고** 외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 ***동 ***호 (남촌동,남촌*차품림아파트)	**** * 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근저당 권자	
38	기정	593-1 1	도	90	31	59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마을풍림아파트 ***동 ****호				변경
	변경	593-1 8	도	28	28	-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마을풍림아파트 ***동 ****호				
39	기정	593-1 7	전	1	1	-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마을풍림아파트 ***동 ****호				변경 없음
총 계	기정			12,456	2,314	10,142						
	변경			12,105	2,234	9,871						

용 지 조 서

소3-4,3-5호선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일련 번호	기정	지 번	지목	면 적(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변경			공부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7	기정	598-4 6	도	11,736	176	11,5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30	기정	69-1	임	119	119	-	한**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	주식회 사 **은행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	근저당권자	변경 없음
35	기정	73-1	전	241	241	-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 협동조 합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부평시장지점)	근저당권자	변경 없음
총 계		기정		12,096	536	11,560						
		변경		12,096	536	11,560						

지 장 물 조 서 (1)

조서 번호	가정 변경	소재 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위	수량	면 적	물건소유자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기정	수산 동	529-1 3	대문	철제 출입문	개	1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변경
				옹벽	H=2.0m	m	11.9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담장	디자인 웬스	m	11.9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변경	수산 동	529-1 3	대문	철제 출입문	개	1		경기도안산시단원구 광덕서로***동****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장**	경기도안산시단 원구광덕서로 ***동****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장**	
				옹벽	H=2.0m	m	11.9		경기도안산시단원구 광덕서로***동****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장**	경기도안산시단 원구광덕서로 ***동****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장**	
				담장	디자인 웬스	m	11.9		경기도안산시단원구 광덕서로***동****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장**	경기도안산시단 원구광덕서로 ***동****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장**	
2	기정	수산 동	586-1 1	교목	D15	주	5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변경 없음
				교목	D5	주	4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3	기정	수산 동	538-2 6	옹벽	H=1.2m	m	37.4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변경 없음
				교목	D15	주	11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교목	D5	주	10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담장	디자인 웬스	m	37.4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4	기정	수산 동	538-1 0	창고	콘크리트 블럭조	동	1	편입면 적 (0.3㎡)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변경
	변경	수산 동	538-2 7	창고	콘크리트 블럭조	동	1	편입면 적 (0.3㎡)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5	기정	수산 동	538-2	대문	철제 출입문	개	1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변경
	변경	수산 동	538-1 8	대문	철제 출입문	개	1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6	기정	수산 동	538-1 0	교목	D20	주	2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변경
				교목	D5	주	7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교목	D10	주	9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변경	수산 동	538-2 7	교목	D20	주	2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D5	주	7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D10	주	9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7	기정	수산 동	538-1 8	옹벽	H=1.2m	m	24.8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변경 없음
				교목	D10	주	9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8	기정	수산 동	538-2 2	비닐 하우스	강봉조	동	1	편입면 적 (9.4㎡)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변경
				관목		m'	5.1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변경	수산 동	538-2 4	비닐 하우스	강봉조	동	1	편입면 적 (9.4㎡)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관목		m'	5.1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지 장 물 조 서 (2)

조서 번호	기정 변경	소재 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위	수량	면 적	물건소유자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9	기정	수산 동	540-7	비닐 하우스	강봉조	동	1	편입면 적 (38.0㎡)	인천 남동구 수산동 ***	한**	인천 남동구 수산동 ***	한**	변경 없음
10	기정	수산 동	536-7	조경석		m	2.5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변경 없음
11	기정	수산 동	536-7	담장	나무웬스	m	28.3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변경 없음
				교목	D10	주	9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12	기정	수산 동	536-2	교목	D30	주	1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변경
	변경	수산 동	536-7	교목	D30	주	1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13	기정	수산 동	544-3	담장	디자인 웬스	m	13.7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천**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천**	변경
14	기정	수산 동	544-2	담장	능형망 웬스	m	21.0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천**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천**	
				교목	D10	주	9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천**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천**	
	변경	수산 동	544-3	담장	능형망 웬스	m	21.0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천**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천**	
				교목	D10	주	9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천**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천**	
15	기정	수산 동	529-14	담장	디자인 웬스	m	14.8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변경
				교목	D5	주	10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관목		m²	11.6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조경석		m	9.0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변경	수산 동	529-15	담장	디자인 웬스	m	14.8		경기도안산시단원구 광덕서로***동***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장**	경기도안산시단원구 광덕서로***동***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장**	
				교목	D5	주	10		경기도안산시단원구 광덕서로***동***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장**	경기도안산시단원구 광덕서로***동***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장**	
				관목		m²	11.6		경기도안산시단원구 광덕서로***동***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장**	경기도안산시단원구 광덕서로***동***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장**	
				조경석		m	9.0		경기도안산시단원구 광덕서로***동***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장**	경기도안산시단원구 광덕서로***동***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장**	

지 장 물 조 서 (3)

조서 번호	기정 변경	소재 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위	수량	면 적	물건소유자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6	기정	수산 동	529-10	교목	D5	주	5		인천 서구 건지로 404, ***동 **** (가좌동, 가좌한신휴플러스아 파트)	조**	인천 서구 건지로 404, ***동 **** (가좌동, 가좌한신휴플러 스아파트)	조**	변경 없음
				조경석		m	11.3		인천 서구 건지로 404, ***동 **** (가좌동, 가좌한신휴플러스아 파트)	조**	인천 서구 건지로 404, ***동 **** (가좌동, 가좌한신휴플러 스아파트)	조**	
17	기정	수산 동	587-8	담장	디자인헬 스	m	22.5		인천 남동구 백범로 62,나동 ***호 (만수동, 남동정수사업소관사)	방**	인천 남동구 백범로 62,나동 ***호 (만수동, 남동정수사업소 관사)	방**	변경 없음
				대문	디자인 헬스 출입문	개	1		인천 남동구 백범로 62,나동 ***호 (만수동, 남동정수사업소관사)	방**	인천 남동구 백범로 62,나동 ***호 (만수동, 남동정수사업소 관사)	방**	
				비닐 하우스	강봉조	동	1	편입면 적 (10.5㎡)	인천 남동구 백범로 62,나동 ***호 (만수동, 남동정수사업소관사)	방**	인천 남동구 백범로 62,나동 ***호 (만수동, 남동정수사업소 관사)	방**	
18	기정	수산 동	589	담장	구조용 파이프	m	15.7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 (도림동)	김**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 (도림동)	김**	변경
				비닐 하우스	강봉조	동	1	편입면 적 (13.6㎡)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 (도림동)	김**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 (도림동)	김**	
	변경	수산 동	589-2	담장	구조용 파이프	m	15.7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 (도림동)	김**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 (도림동)	김**	
				비닐 하우스	강봉조	동	1	편입면 적 (13.6㎡)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 (도림동)	김**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 (도림동)	김**	
19	기정	수산 동	578-9	간판	지주간판	개	1		인천 남동구 남촌동로 8, ***동 ***호 (남촌동, 남촌2차풍림아파트)	고** 외1인	인천 남동구 남촌동로 8, ***동 ***호 (남촌동, 남촌2차풍림아 파트)	고** 외1인	변경
	변경	수산 동	578-10	간판	지주간판	개	1		인천 남동구 남촌동로 8, ***동 ***호 (남촌동, 남촌2차풍림아파트)	고** 외1인	인천 남동구 남촌동로 8, ***동 ***호 (남촌동, 남촌2차풍림아 파트)	고** 외1인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15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61번길 8 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22번길 5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1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0. 21.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35-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22 번길	5	2015.10.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4 번길	68	2015.10.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6-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 번길	42	2015.10.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6-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 번길	42-1	2015.10.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6-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 길	42	2015.10.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6-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 번길	40-3	2015.10.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6-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 번길	40	2015.10.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0-7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33 번길	18-12	2015.10.1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10-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	6	2015.10.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10-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	8	2015.10.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9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102	2015.10.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9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10 0번길	3	2015.10.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7-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 서로6 1번길	8	2009.11.16	문화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21	건물등의주된출입 구가문화서로61번 길8번 기초구간에위치하 여8을건물번호로부 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10-12, -14, -3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 북로	6	2011.3.24	도림로의 북쪽에 위치하였다는 의미로 제명	2015. 10. 21	건물등의주된출입 구가도림북로6번 기초구간에위치하 여6을건물번호로부 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7-18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 외로3 77번 길	44-47	2009.11.16	함박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21	건물등의주된출입 구가함박외로377번 길44-47번 기초구간에위치하 여44-47을건물번 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95-10,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말로	102	2009.11.16	구월말이라는 옛 구월동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5. 10. 21	건물등의주된출입 구가구월말로102번 기초구간에위치하 여102를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 로209 번길	5-10	2009.11.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 10. 21	건물등의주된출입 구가은봉로209번길 5-10번 기초구간에위치하 여5-10을건물번호 로부여	